

# 의정활동보고서

제205회 임시회(2006. 3. 7 ~ 3. 17)

경 상 북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은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05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우수경칩이 지나고 활력이 넘치는 새 봄을 맞아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사업초기 단계부터 여론수렴 등 사전영향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적으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7위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도 각종 지표가 경기 회복 전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노사가 화합 단결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이 있으며, 금년 들어 처음인 동시에 제7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서는 도정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나 의문사항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한 산불예방과 해빙기도민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 차 례

I. 개 황 .....

II. 의사일정 .....

1. 소 집 .....

2. 회 기 .....

3. 활 동 .....

가. 본회의 .....

나. 상임위원회 .....

III. 의안 처리 .....

1. 본회의 .....

2. 상임위원회 .....

IV. 민원 처리 .....

1. 청 원 .....

2. 진 정 .....

가. 접 수 .....

나. 처 리 .....

V.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 접수사항 .....

2. 조례 공포사항 .....

VI. 기타사항 .....

VII. 도정질문 .....

VIII. 신상발언 .....

## 부 록

### 조례안 .....

1.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타안 .....

1.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05회 임시회는 2006년 3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3월 1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5회 상임 및 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3월 7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상발언(김선중 의원)을 청취한 후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도정질문(김병진·김진기·김준호·김정기 의원)을 청취한 후 산회 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3월 7일부터 조례안 심사와 현지 확인을 하였다.

3월 17일(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상발언(손규삼·김순견·김석호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의결하고, 경상북도의회 제205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II. 의사일정

### 1. 소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6-2호(2006년 2월 22일, 수)

라. 집회일시 : 2006년 3월 7일(화) 11:00

###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6년 3월 7일 ~ 3월 17일 (11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 (누계 88회)

○ 상임위 회의 : 5회

###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6. 3. 7(화) 11:00 (제1차)	1. 신상발언 ○ 김선중 의원 (안동시, 교육환경) 2. 제20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6. 3. 7(화) 11:00 (제1차)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도정에 관한 질문 ○ 김병진 의원 (문경시, 기획과학) ○ 김진기 의원 (영덕군, 행정사회) ○ 김준호 의원 (영천시, 교육환경) ○ 김정기 의원 (김천시, 경제문화)	
2006. 3. 17(금) 11:00 (제2차)	1. 신상발언 ○ 손규삼 의원 (포항시, 농정) ○ 김순견 의원 (포항시, 교육환경) ○ 김석호 의원 (구미시, 행정사회) 2.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6.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3. 7(화) 10:00(제1차)	○ 제2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원안가결

<기획과학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3. 7(화) 12:30(제1차)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3. 7(화) 12:30(제1차)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농정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3. 7(화) 13:00(제1차)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경제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3. 8(수)	○현지확인 · 문화재 보존실태 확인	불영사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6. 3. 7(화) 12:30(제1차)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Ⅲ. 의안처리

####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6 (395)	6 (390)	4 (344)	2 (44)	(2)	(2)	(3)		
조 례 안	소 계	5 (192)	5 (190)	3 (164)	2 (25)	(1)		(2)	
	의회 제안	3 (22)	3 (22)	1 (9)	2 (12)	(1)			
	도지사 제출	2 (138)	2 (136)	2 (126)	(10)			(2)	
	교육감 제출	(32)	(32)	(29)	(3)				
예산·결산	(34)	(33)	(18)	(15)		(1)			
동의·승인	(102)	(102)	(101)	(1)					
건의안	(13)	(12)	(11)	(1)			(1)		
결의안	(16)	(16)	(15)	(1)					
기타안	1 (38)	1 (37)	1 (35)	(1)	(1)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 <부결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승학의원외 14인 발의, 2003. 9. 2, 본회의)
- ②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정기의원외 16인 발의, 2004. 9. 1, 의회운영위원회)

### <철회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철회안  
(김정기의원외 32인 발의, 2004. 7. 2, 본회의)
- ②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박영화의원외 20인 발의, 2005. 6. 9, 본회의)

### <계류 중인 안건 현황 : 5건>

- ① 경상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2. 10. 15, 행정사회위원회)
- ②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3. 9. 8, 기획위원회)
- ③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④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⑤ 쌀값 하락 관련 대책 촉구 건의안  
(정상진의원외 16인 제출, 2005. 12. 16, 미상정)

##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6 (398)	6 (391)	5 (192)	(33)	(102)	(13)	(16)	1 (35)	(2)	(2)	(3)
의 회 운 영	(16)	(15)	(7)				(5)	(3)	(1)		
기 획 과 학	1 (30)	1 (29)	1 (18)		(7)	(2)	(1)	(1)			(1)
행 정 사 회	(116)	(115)	(79)		(33)	(1)	(2)				(1)
교 육 환 경	1 (55)	1 (55)	1 (40)		(13)	(1)		(1)			
농 정	2 (25)	2 (25)	2 (9)		(13)	(3)					
경 제 문 화	(51)	(51)	(20)		(27)	(2)	(2)				
건 설 소 방	1 (24)	1 (24)	1 (13)		(8)	(2)		(1)			
특 별	(35)	(35)		(33)			(1)	(1)			
본회의	1 (46)	1 (42)	(6)		(1)	(2)	(5)	1 (28)	(1)	(2)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IV. 민원처리

###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 2. 진정

#### 가. 접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업	기 타
계	1 (151)	(15)	(24)	1 (14)	(33)	(9)	(9)	(14)	(12)	(21)
의 회 운 영										
기 획 과 학	(14)		(1)		(9)		(2)			(2)
행 정 사 회	(28)	(10)	(8)	(1)	(2)					(7)
교 육 환 경	(26)			(1)		(9)		(13)	(2)	(1)
농 정	(9)			(1)	(1)				(7)	
경 제 문 화	(33)	(2)	(14)	(4)			(7)			(6)
건 설 소 방	1 (38)	(3)	(1)	1 (7)	(21)			(1)	(3)	(2)
특 별 위 원회	(3)									(3)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3 (148)	3 (148)				1 (3)
의회운영						
기획과학	(14)	(14)				
행정사회	(28)	(28)				
교육환경	(26)	(26)				
농 정	(9)	(9)				
경제문화	2 (31)	2 (31)				(2)
건설소방	1 (37)	1 (37)				1 (1)
특별위원회	(3)	(3)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V.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6. 2. 23)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과학 (2006. 2. 24)
경상북도지사 (2006. 2. 23)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06. 2. 24)
손규삼의원외 18인 (2006. 2. 28)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6. 3. 2)
박승학의원외 18인 (2006. 2. 28)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안	농 정 (2006. 3. 2)
박승학의원외 18인 (2006. 2. 28)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농 정 (2006. 3. 2)

###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6. 2. 16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2. 23 (제2903호)
2006. 2. 16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2006. 2. 23 (제2904호)

## VI. 기타사항

### ○ 『역사와 의식』 독도진경 특별전

- 일 시 : 2006. 2. 16(목) 15:00
- 장 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 ○ 경상북도 노사정협의회

- 일 시 : 2006. 2. 17(금) 14:3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 ○ 통합방위 지휘소 운용 시범식

- 일 시 : 2006. 2. 21(화) 14:00
- 장 소 : 전남도청 총무지휘소
- 참 석 : 이철우 의장

### ○ 이의근 도지사 출판기념회

- 일 시 : 2006. 2. 27(월) 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 ○ 제87주년 3·1절 기념행사

- 일 시 : 2006. 3. 1(수) 10:0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황상조·이우경 의원

## VII. 도정질문

□ 2006년 3월 7일(화) 제20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金柄軫 議員 ◎

문경시 출신 기획과학위원회 소속 김병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0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300만 도민의 좀더 나은 행복과 경북의 미래를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태어난다는 명언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도승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정치 형태는 국민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물고 물리기 작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너무 교만해져 있고 열린당은 야당을 능가하는 비판을 일삼으며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회오리바람은 아침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소낙비는 종일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아침나절의 회오리바람이나 종일 오지 않는 소낙비이길 바라는 것은 오직 본의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하나의 손가락이 남을 향할 때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은 화살이 되어 자신 돌아온다는 사실을 정치권에 일깨워주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2004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초에는 경상북도의 산하기관도 정부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추어 도내 일선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6월24일 우여곡절 끝에 176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배치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 도에 배치된 공공기관 이전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각 지역 간에 갈등을 겪는 등 오랜 시간들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 결정 후 2005년6월30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구에 소재한 도의 산하기관을 경북지역에 옮길 계획이며 공공기관입지선정위원회가 옮길 장소를 결정하면 구체적인 이전일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방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가축위생시험소 등 대구 시내에 소재한 7개의 도청산하 기관이 어떤 일정으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혁신도시 결정 이후에도 분산배치론이 나오고 심지어 분도론까지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그 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도청이전문제까지 걸려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전과 더불어 도산하기관의 도내 시군으로의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에 실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균형발전을 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문제들과는 달리 하루빨리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도 산하기관에 대한 추진일정, 추진방법, 배치기준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시군에 분포된 경상북도의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위배되어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 경상북도 일선 시중에는 문경시 등 군지역에서는 군위, 청송, 고령, 울릉 등 일부 지역이 소방서 외에는 아무런 도기관이나 사업소가 없는 형편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도산하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도산하기관이 골고루 분포되는 동시에 집적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도산하기관 등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의 수준은 삶의 수준이고 교육의 질은 삶의 질이다 라는 명제 하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으며 다음 사회는 시스템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

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지식과 새로운 정보습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입시제도가 교육정책의 모든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속에서 교육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적자원의 양성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도구적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곧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며 교육의 질이 삶의 질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개개인의 수준이 곧 국가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선진국들은 평생학습을 국가적 교육이념으로 선정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학습권 보장의 맥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곧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핵심역량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의 우리 평생교육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낮은 수준입니다. 평생학습이 개인의 발전과 행복에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지역경쟁력 제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육은 물론 재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결코 교육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이에 학습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가 전국 33개 시군 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평생학습도시가 보다 확대되어 경상북도 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시군의 읍면마다 기존의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마다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그를 중심으로 농촌형 학습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평균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은 잘 살고 못 배운 사람은 못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예교육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예란, 즉 문자해독은 일상적인 활동 가운데 가정, 일터 또는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도로표지판, 이정표, 영수증, 구직원서, 열차시간표, 지도 또는 약품설명서 등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인구 중 문예교육이 필요한 초등학교졸업 미만의 학력을 소지한 인구는 무려 24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사무국이 1994년부터 실시해 온 성인인구의 문서해독능력 측정도구를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결과 일상문서해독 능력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문서해독능력은 글씨해독 여부만 보여주는 단순 문맹률 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문맹률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문자해독율과 80%를 넘는 대학진학률 등 우리가 자랑해온 교육통계가 실상은 일상생활과 유리된 허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문서해독능력이 부족하다면 극심한 사회생활의 불편은 물론 최하생활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일부 노인회관의 여성들의 경우 약 60~70%가 글자의 해독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인터넷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사를 선발하거나 지역 초등학교 교육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특별히 문예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글쓰기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지역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나 주부를 위한 한국어교실, 한국문화교실 등을 열어 그들의 성공적인 삶을 가꾸어 나가는데도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엄마를 둔 자식들은 나중에 또 다른 비문예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지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15년 이내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5세미만의 어린이보다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이면 인구의 20%이상이 노인이 되는 그야말로 초고령사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를 2050년에는 세계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은퇴한 노인들은 대부분 평생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면 보수에 상관없이 기꺼이 일할 의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의 왕성한 활동은 사회의 통합발전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세수입도 늘 수 있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한 대책이나 정책은 사회적 시혜 또는 부조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일할 장소와 적절한 일거리 또는 노인의 경력을 활용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난해 5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44.9%, 전체 취업인구 가운데서도 55세 이상이 16.9%를 차지할 만큼 이제 노년층의 일자리 구하기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노인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들여다보면 노인 일자리가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보다는 또한 이들 일자리들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취미생활이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소일거리 제공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인력 파견형 일자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금이 월 20만원에 그치고 일자리들의 절반 이상이 취업 지속기간은 6~7개월 밖에 안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올해 7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자리의 대부분이 거리질서나 환경정비 등과 같은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실

효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건강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노인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외에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건강하거나 불편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노인분들이 완전히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까지 가서야 어떤 노인복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거나 경미한 장애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노인건강 대책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경북의 시·군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각종 운동기구 등을 보급하고 있으나 고장도 나고 관리도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한 예방차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노인분의 활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 각 시·군단체 등과 협력하고 보건소, 생활체육협의회,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하여 건강체조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안학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학부형들 사이에서 스스로 기존 집합형태의 학교를 벗어나 개성이 존중되고 개체를 중시하는 교육분야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초중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동반하는 대안학교들이 그러한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하면 공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대안학교 특유의 장점이 있기에 그 교육적인 효과도 일부분에서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매년 4만명 정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시하여 대안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학교형태의 대안학교 설립 운영규정이 상반기 중에 제정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안학교 중 일부분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학교로서 정규교육 과정의 기본공통과정을 같이 학업을 이수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 정규고등학교 과정과의 연계를 전혀 할 수 없어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장점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에 일반 정규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필요할 경우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일부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위탁학교로 지정된다면 위탁학교에서 정규고등학교의 학생이 대안학교의 특성화교육을 받아도 자신이 적을 두고 있는 정규학교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도록 하는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대안학교와 정규학교가 완전히 분리될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경북의 경우 대안학교는 현재 경주화랑고등학교 한 곳밖에 없습니다만 현재의 대안학교 수용인원으로도 충분한지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외에도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학교공부 대신에 각 가정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홈스쿨링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제2의 대안교육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홈스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교육적 관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다양하게 진행되는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사회가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교육청 내에 홈스쿨을 시행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홈스쿨링 지원센터 등을 만드는 것도 지역의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관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金辰基 議員 ◎

영덕군 출신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김진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0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3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시는 도승회 교육감과 관계 교육공무원에게도 그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백만 경북도민의 염원과 희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북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점들을 보고 있다면 경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고통 문제, 가중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지역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등 수많은 문제와 현안들이 경북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3백만 도민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시의적절한 대책과 방안들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개발계획, 혹은 대처방안만 백화점식으로 도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기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냉철히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얼마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잘못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함에도 혹여 반복적으로 같은 대책 방안을 시기만 달리하여 되풀이하지는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경북과 3백만 경북도민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높은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열정과 지혜로 더 많이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오늘의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으면서 도정현안에 대한 주요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가 최근 우리 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5·31지방선거를 앞둔 각 후보자들도 도청이전과 관련한 공약을 이야기하는 등 이래 저래 도청이전 문제는 우리 경북도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북도청이 어떤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1995년 당시의 도청입지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공정한 기준으로 지역별로 도청이전을 위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도청이전을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도청이 경북지역의 어디로 가야한다고 논의를 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과 관련한 일정이 명시된 도청이전 로드맵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히 도청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몇월 며칠 언제까지 새로운 기준에 맞는 후보지를 물색하고, 또 언제까지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또한 적어도 모년 모월 언제까지는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도청이전문제로 인한 지역간 갈등만 심화될 것이 분명하며 도청을 어떤 지역으로 옮기든 간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보건대 도청이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도청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어 도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도청이전관련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지난 1967년 본청건물 내에만 476명이었던 직원이 지금은 1,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들이 한 건물에 있어 모든 것이 포화상태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일부에서는 대구·경북 통합문제, 행정구역개편문제 등이 거론되기도 하나 당장 실현되지도 않을 문제로 갑론을박에만 머물러 있다면 도청이전으로 옹도 경북의 위상을 이제는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 도 산하기관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하루빨리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 산하기관의 이전은 지난해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없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청이전에 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도청이전과 산하기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동해안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그 동안 U자형 국토발전축과 연계하여 경북 동해안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대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구상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 경상북도는 낙후된 동해안 권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하려는 구상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광역교통 인프라라 함은 영덕에서 서천까지의 동서6축 고속도로, 당진에서 울진에 이르는 동서5축 고속도로, 포항에서 강원도계까지 이르는 국도 7호선의 조기확장 등을 말합니다. 특히 포항에서 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는 포항 영일만 신항, 울진공항 등과 연계한 산업물동량의 입체적 수송을 가능하게 하고 동해안 관광객 교통편의 증대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나타내게 할 것으로 지역민들에게 부푼 꿈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대한 동해안개발계획이 아니더라도 실제 방폐장이 동해안에 유치됨에 따라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어 환황해권과의 광역교통망 조기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즉, 영덕에서 서천간 495km에 이르는 동서6축 고속도로와 당진과 울진의 동서5축 고속도로는 하루 빨리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긋지긋한 국도 7호선의 확장도 끝을 내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조기완공을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동해안 주민들의 가슴을 속 시원히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U자형 국토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아울러 경북 동해안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동해안 주민들은 실행하지도 못할 거창한 계획보다는 차라리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민들의 현실을 감안한 항구 및 포구의 준설작업, 방파제 보강 등 좀더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가령, 동해중부선 철도의 역사 입지가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영덕 병곡의 경우 백석에 철도역사의 입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면 천혜의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고래불해수욕장에 철도역사의 입지가 이루어진다면 영덕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환동해권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개발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의사가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한 질문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유인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최근 우리사회는 양극화현상이 심해지면서 사회 저층민을 괴롭히는 부조리 현상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령, 노인과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 저소득 자영업자 금전갈취,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국민들의 민원제기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공무원 등이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불리는 저층민들을 좌절시키는 일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정부 13개 기관 합동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합동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사회의 부조리와 전면전을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최근 우리 경북도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하여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회생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의 방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철저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제제일도정을 추구하는 경북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말에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2,000여 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부품 납품가격을 약 10% 인하해 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청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월한 입장의 대기업과 열세적 지위에 놓인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 지역기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현대 계열사에 납품하는 지역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 중소기업 업체가 받는 인하 압력은 단순히 압력 정도가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더욱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지역의 차부품 협력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지만 종업원과 은행 빚 때문에 문을 닫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본의원은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같은 대기업이지만 포스코의 경우 납품단가 인하 대신에 원가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기업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고, 구미의 삼성전자는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하며 납품대금 인하는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기아차는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방침을 발표하는 등 경영위기 요인을 겨우 연명하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현대차 직원들은 노동귀족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임금이 높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납품단가 인하는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지역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몰아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지역의 부품업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어떤 형식으로든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공동보조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넷째, 동해안 어민생존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연근해어장에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이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생태환경을 무시한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어패류의 산란장 감소, 치어의 남획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동해안 어민 생존권과 관련하여 시급한 몇 가지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동해안은 급속한 환경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폐그물, 통발 같은 어구 무단투기 행위, 육상폐기물의 해상투기 등은 바다오염을 크게 증폭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서식환경 악화를 불러와 연안어장 황폐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다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청정 동해안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쓰레기 해양 무단투기의 금지, 해안가 쓰레기의 주기적 대청소,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청정동해를 위한 지속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고기의 서식환경이 급격히 나빠져 물고기들을 찾아보기조차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연안어장의 고갈은 정치망어장, 양식장, 구획어업 등의 무분별한 허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망어장의 경우 모기장과 같은 그물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더욱이 양식장의 밀집으로 물고기의 이동통로마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포항 영덕 등 동해안 바다에는 정치망어장만 100곳에 달하며 구획어업도 215곳에 어업허가를 내어준 상태이며 해상 가두리양식장도 6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바다의 산란장기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냉온수대의 변화 등으로 어군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거니와 이에 금어기의 적절한 조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어족자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한 수산자원회복 정책에 발맞추어 바다 목장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의 기구 및 기능의 확대가 필

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은 고유가의 여파로 인해 현재 면세유 가격의 인상 등으로 출어경비조차 건지지 못하여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일마저 일어나는 등 어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실제 경주 감포항, 영덕 강구항, 울진 죽변항 등 경북 동해안의 각 항구와 포구에는 하루평균 200~300여 척의 소형어선들이 기름값 때문에 마냥 정박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우리 의회에서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유류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과 북한은 지난 2005년 6월 어업협정을 맺고 향후 3년간 동해안 북한수역에서 조업을 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황폐한 동해안의 오징어를 비롯한 어자원의 씨마저 말리는 협정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어민들은 지난 해 어자원 고갈을 염려하여 정부당국자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현재 동해안 어민들은 이제 생존권마저 잃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보다 입어료를 더 주고서라도 북한과 입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강원도 등의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간 원활한 어업관련교류를 도모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동해안 어민들이 호소하는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정부 당국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민을 위한 제대로 된 수산정책은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동해안 어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단기적으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에서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교육 황폐화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54개교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경북이 22개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 한 명의 신입생이 입학한 초등학교도 57개교나 되는데 이 중에 역시 경북은 20개교에 이르고 있어 경상북도의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촌지역은 학교의 정규수업 외에는 아무런 추가교육의 기회가 없다는 것, 학생수가 적다보니 교사들도 한꺼번에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불리한 교육환경으로 교육의 수준이나 질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교육의 황폐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농어촌의 고등학교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말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교의 43%인 1,900여 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시읍단위를 제외하면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모두 통폐합 대상이 되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농어촌을 살리려면 농촌의 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농어촌 학교는 지역의 상징이자 지역민들이 의지하는 곳이며, 마지막 남은 농어민들의 희망을 품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어촌의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파격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농어촌 지역의 학교 살리기 운동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金俊鎬 議員 ◎

교육환경위원회 김준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규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 교정을 보지 않아 가지고 문맥이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통합과 상생 대신에 갈등과 분열이 더욱 표면화 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분배 대신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의 체감지수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첫째,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2일은 소위 다케시마의날로 제정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이 날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 현민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논평에서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그들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논평하나 내고 더 이상의 별다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어 갈수록 수위가 높아만 가는 시마네현의 도발적 망언들에 참으로 끓어오르는 공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정작 독도가 속해 우리 경상북도는 시마네현의 망언과 망동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보다 단호한 입장표명과 효율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 2월23일 울릉도를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수호 및 환동해권 해양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울릉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독도를 포함한 울릉군 전체

면적 72.6평방킬로미터 가운데 66%인 48.4평방킬로미터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해양심층수랜드 등을 비롯한 10개의 기반조성 및 관광특화사업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923억원을 들여 친환경적인 관광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계획이 과연 얼마만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3,0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울릉도 국립공원지정을 재추진하려는 환경부가 이와 같은 대규모개발계획에 동의할 것인지가 의문이며, 또한 1,500억원이나 들어갈 일주도로의 건설비도 쉽게 배정될 지가 더더욱 의문입니다. 게다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법적인 면적요건에도 미비된 현실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본의원은 이와 같은 독도와 관련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상징 그 자체인 독도를 순수 민간인의 신분으로 정부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애국심 하나만으로 온몸으로 일본의 영토침범을 막아낸 독도의용수비대 33인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숭고한 애국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한 이들 독도의용수비대 33인에 대한 예우가 먼저 실천되고 나서 독도 지키기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둘째, 한·미FTA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일 한국과 미국정부는 관세를 철폐하고자 하는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FTA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협상이 5월경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협상분야는 농업을 비롯하여 전자, 섬유, 금융, 서비스, 통신 등 20여개 분야로 사실상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섬유, 자동차, 전기, 전자 등의 일부 업종이 해외진출을 늘이는 등의 효과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미FTA는 대미 무역흑자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투자완전자유화, 보건의료 및 교육시장 등을

전면 개방하는 공공서비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기간서비스까지 민영화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FTA가 양국간 품목의 완전한 관세철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농산물이 그대로 들어와 우리의 농업은 물론 축산업 분야는 거의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진배없어 크나큰 충격과 절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이 처한 앞날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깊은 암흑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고 하여도 이처럼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한·미 FTA협상에 있어서 농민의 목소리를 협상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참여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북은 농업이 근간을 이루는 농도로 농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 FTA로 인해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피해 부분에 소득이 이전되거나 보존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과 농촌을 희생시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전면 개선을 검토하는 등 개혁적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려 300만 도민이 농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경북 농업의 과거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농정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농정백서를 발간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북의 SOC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지역의 SOC 필수사업들이라고 하면 동해중부선, 중부내륙선,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2006년~2015년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구간과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당초 2014년 준공

계획이었지만 2016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포항 간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도 당초 2012년 준공계획이지만 2016년 이후로 역시 연기되었습니다. 특히, 동대구~경주 간의 대구선은 환동해권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안고 있었으나 대구선 복선전철화사업도 당초 2009년 준공예정이었지만 2010년 착수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경북지역의 대부분의 SOC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8,000억원의 복지예산 확보로 인한 예산부족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동해안 관광객과 포항~경주지역 및 영천 등 경북도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도내의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경북의 교통인프라 망을 기초로 하는 여러 사업들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서 및 여가활동의 감소와 자율적 학습능력의 저하 등은 물론, 심지어 교사불신과 사교육비 급증으로 인한 가계부담 등의 폐해를 유발하기에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현장 뿐 아니라 국가전반에 걸쳐 다각도로 진단해 근원적인 정상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교육은 교육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어 가난을 대물림 하는 꼴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지위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라의 근간까지 흔드는 결과로 확대될 수 있어 반드시 정책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두 페이지를 건너뛰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하며,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되고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교육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4년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金正基 議員 ◎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좌익보다는 우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중앙정치,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이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김천시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김정기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사회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손규삼 부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 늦게까지 답변을 위해서 임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회나 우리 지사님이 나 이제 임기 말이 되어 가지고 좀 김이 빠진 듯 합시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아마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먼저 지난 12월13일 혁신도시가 김천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선정을 위하여 애쓰신 선정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제출한 질문요지 1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질문은 본의원이 의장께 제출한 질문서를 이 발언 말미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을 보면 13개 공기업의 개별이전의 부당함을 적시한 내용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정위원장이셨던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정위원회의 결정내용도, 또한 심의내용도 아닌 사건을 전 도민이 지켜보는 데서 말해 가지고 온통 도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도지사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해도 학자로서 무책임하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로 하여 일어난 혼란에 대하여 홍철 원장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잘못을 사과하고 대구·경북연구원장직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도지사의 의중을 반영한 처사라면 이것은 더더욱 심각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바꾸어보면 학자적 양심도 저버린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요즘 매일같이 출근하는 대구경북연구

원의 연구성과물에 대하여도 그 내용에 있어서 권력으로부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하여 더 이상 용역발주나 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논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경북대구연구원은 경북대구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통합간담회를 열고 두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우선 올해 3월 대구와 경북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을 설립해 경제통합과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북도와 대구시가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내년 하반기에 대구경북 행정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8년에는 대구경북지역개발청 출범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통합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본격적인 행정통합과 경북도청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을 주장하고 지사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행정은 분리되어 있으나 경제의 실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대구나 경북은 조례의 제정권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조례의 범위보다 법령의 범주에서 그 움직임이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민감한 생물과 같아서 법령의 효력보다 먼저 움직이고 생성, 소멸하는 반면 법률과 권력에 의한 강제 수단에는 억제당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법령의 소멸과 함께 소멸한다고 하겠습니다.

도지사 임기 말에 거론되는 경북대구의 통합론, 도청 이전론,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경제통합론 등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혼란스럽기까지 한 현안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섬유산업, 한방산업, 바이오산업 등 경북과 대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복투자는 아닌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조정이 되고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의 통합 없이 지역의 이해가 얽혀 있어 논란만 가중될 뿐 과연 경제통합이 가능한 논의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도청이전에 관한 내용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걱정된 것인가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통합을 하면 행정비용도 절감된다는 것인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 행정비용은 증가시키고 경제적 실효성은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민선 11년간 변죽만 울리다 이제 와서 가능성도 없을 때 도청이전 운운하는 것은 경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청이전이 정치쟁점화 할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도지사의 할 일로 남겨놓으시고 소모성 논란을 중단함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합니다.

선 경제통합 후 행정통합이라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과 이에 반해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도청이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견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나고야를 경제통합의 모델로 운위하는데 대구의 팀이 지금 일본에 가 있어서 알겠지만 대구경북과는 환경이 다릅니다. 대구경북은 원래 경상북도 대구시였고 나고야는 주변과 그 뿌리를 오래부터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뿌리들이. 그 환경들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내막적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그런 걸 자꾸 요란을 떠니까 본의원이 오늘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독도의 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행정 조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략 앞서 김준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달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98회 임시회에서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특정의 날짜를 지정하여 도발함에 특정의 달을 지정하여 독도

의 영유권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뜻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의 달에는 도비 예산으로는 일본여행을 참가하고 학술행사를 비롯한 영토야욕의 분쇄를 위한 행사를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당시에도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습니다. 경상북도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모 언론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독도와 관련된 조례안을 공무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굴절된 시선으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하고 따라 울기 새처럼 많은 언론들이 마치 독도의 달 조례안이 공무원들의 사적 여행자유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해서 본질을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의원은 대표 발의자로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두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일본의 교토통신과 산케이신문, 아사히 등 주요 신문 방송으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언론사들보다 일본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독도의 달 조례안을 처음으로 보도한 언론사가 왜 비판적 견지에서 기사를 게재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독도의 달 조례와 관련한 사업이나 그 시행계획,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조례를 사문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데 대하여 시차를 두고 대응함이 더 뜻이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이고 독도의 달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묻는 바입니다.

제가 원래 행정부지사로부터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 자꾸 우리 관계관들이 국장답변으로 해 달라 해서... 국장, 답변 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부지사 답변 좀 해야 됩니다. 왜 이러는가 하면 이게 자꾸 인사가 심하니까 과장 6개월 만에 바뀌고 국장 6개월 만에 바뀌고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나가고 나면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자꾸 리바이벌 하다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골탕 먹이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시내버스요금 단일제와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요금 단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가 거리별 요금의 차액을 업체에 보전해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매년 15개 시외버스업체에 국도비와 시군별 시내 농어촌버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어느 시도보다 권역이 넓고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교통 이동수단에 대한 제고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교통정책을 이제는 단순하게 버스업체의 유지관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처럼 시내버스 공영제가 정착되면 버스의 정시성, 신속성, 일정한 배차간격, 버스 결행 예방 등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대구 오염 감소, 교통혼잡 비용 절감 등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경북도의 일선 시군의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추진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나 되며 도내 일부 시의 경우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김천과 칠곡, 북삼읍을 경유 구미로 가는 버스노선의 개설을 3년이상 본의원이 주장을 하였으나 지금도 업자의 편의에 따라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약 5,000명의 인구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국장, 과장, 담당은 6개월이 멀다하고 자리가 바뀌고 업무의 일관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업체의 청탁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조리한 행정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관행이라며 버스노선을 마치 자신들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업체편의대로 매매를 하고 주무부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구경만 하다가 업무가 바뀌면 책임의식 없이 민원을 팽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여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도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관할관청이 업자로부터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이 경제통상실장으로 있을 때 답변을 통해 시정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업자들의 이권갈등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시정 명령 등 지사의 고유권한을 발동해서라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천 소년교도소 이전에 관해서 건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바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경북의 혁신도시가 김천으로 결정되면서 김천의 농소, 남면 일대에 혁신도시가 조성 될 예정입니다.

도시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혁신도시가 김천의 중심 내지는 중추적인 도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유동 인구만도 지금의 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진입로에 김천소년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년교소가 김천교도소로 바뀌었습니다. 주위에 중학교와 보육시설이 담당을 같이 하고 있고 1km이내 중고등학교, 500m 내에 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으므로 당초부터 교도소부지로서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법무부에 이전을 검토해 줄 것을 도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을 통과 하면서 처음으로 대하는 것이 교도소라는 것은 비단 김천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혁신도시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13일 혁신도시가 김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표명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해 애를 쓰신 선정위원님들의 노고와 지사님께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입지선정 발표 당시 위원장이신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분산배치 가능성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혁신도시 분산배치라는 사건의 개진이 아니라 지사님의 의중이 반영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 된 결과만을 발표해야 할 책무를 가지신 분이 왜, 무슨 이유로 권한 외의 입장을 표명해 도민들의 민심을 어수선하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선정권의 주체인 경북도와 도지사의 의중을 반영한 발언이라면 대구·경북연구원이 만들어내는 연구 성과물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금년 2월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사님께서 혁신도시 건설 문제를 경북도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19일 건설교통부에 도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별이전이라는 협의 요청서를 보내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요청서에는 혁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 방향과 함께 도와 공공기관, 건교부간

기본 협약에 명시 돼 있는 개별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과 입지선정위원회도 개별이전을 촉구한 것 같은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산배치에 대한 의견이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도 개별이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십니까? 도와 입지선정위원회가 개별이전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전력기술과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원수만 해도 2,047명으로 경북으로 예정된 13개 기관 직원 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만약 개별이전이 추진된다면 김천은 무늬만 혁신도시이지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와 역할은 무색하게 되고 혁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천시민들은 허울뿐인 혁신도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혁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도 아닐 것입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장을 맡았던 대구·경북연구원 홍철원장은 도의 정치력을 운운하며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으로, 우수기술력이 모여있는 한국전력기술은 특정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이라며 그 동안 추진과정을 지켜볼 때 개별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며 경북에서 시·군의 형평성을 위해 알짜배기 기관들을 개별이전 하겠다는 요구는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군의 형평성은 개별이전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교통안전공단 등 13개 공공노조 대표들은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김천으로 다 함께 이전한다고 합의, 결연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분산배치의 논의가 종식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이 질문은 지역이기적인 욕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저지하자는데 그 뜻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VIII. 신상발언

□ 2006년 3월 7일(화) 제20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金善鍾 議員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백만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의근 지사님, 또 2세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승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의 기운이 만연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15년 동안 정들었던 의회를 떠나고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즐거웠고 보람 있었던 15년이었습니다. 생각나는 일은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소방행정학교의 부지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던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도청이전특위를 구성해서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줘서 순위결정까지 해놓고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이전하지 못했던 것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 외,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인정을 합니다. 아직도 의회사무처의 직원인사의 불합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대 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연구실을 만들어서 출발했지만 타시도에서 리모델링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회를 능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6대 의회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지역에서 대표로 올라와서 자기 책상도 하나 없이, 자기 명패도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의원용 컴퓨터를 배정받는다는 의원 책상을 배정받았을 때의 제 심정은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집행부에

비해서 우리 의회는 미약합니다. 의원님들 분발하셔야 합니다.

저도 직책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동료의원님들과 뜻을 달리한 적도 있었고, 또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언짢은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모두가 그것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깨끗이 잊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이 마침 제가 태어난 지 5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도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슨 긴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8대 도의회는 정말 지금까지 1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 승승장구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또 뜻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미력하고 부족했던 이 사람,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정든 의사당을 떠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2006년 3월 17일(금) 제20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孫奎三 議員 ◎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뜻을 굳히고 정든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3백만 도민의 대표가 모인 민의의 전당으로서 도민이 염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원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회 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지역민들에게도 먼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 때부터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경상북도의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는 물론이고, 때로는 따끔한 충언과 비판은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음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남은 반드시 이별을 안고 있고 헤어짐은 다시 만날 것을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별을 말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회심지우의 정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31일 지방선거에서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과 계획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져서 오늘의 이 어려운 과정들을 분명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제7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음을 자부하며, 그에 대한 공과는 훗날 역사와 도민들이 평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닦아놓은

경상북도의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8대 의회에서는 더욱 더 발전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金淳見 議員 ◎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7대 도의회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하고 떠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당연한 일이지만 막상 정든 도의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5대 도의회 진출 때의 설렘은 말할 것도 없고 6대 도의원 낙선으로 경북도의회를 멀리서 바라보던 안타까운 심정도 지금 이 자리에 서니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이 됩니다. 7대 도의회에 재입장하면서 다짐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돌이켜 보면서 떠나는 지금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지방화·분권화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사명 앞에서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는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론에 얽매어 관계공무원에게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또는 의욕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누를 끼쳤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경북도의회를 사랑합니다. 특히 지방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다짐했던 몇몇 동지들의 우정은 영원히 저 인생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런 동지들과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감히 정의를 내려봅니다. 경북도의회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와 같은 정겨운 곳입니다.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이 오늘 저를 포항시장 후보로 만드는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얻어서 물러난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저는 한나라당 경선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정상을 앞두고 누군가가 등을 떠밀어줘야 할 동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멀리서, 가까이에서 그동안 옛정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라도 성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포항을 찾는 여러분을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하도록 굳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의회가 3백만 도민의 대변기관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金碩鎬 議員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 출신 김석호 도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김석호는 금번 5월31일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별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2년 7월 두려움과 기대, 긍지와 책임감이 교차하던 첫 등원이 떠오릅니다. 의회에서 경북과 구미의 번영, 도청이전, 독도 수호, 지방자치, 지방분권, 복지, 환경, 희망, 21세기 성장엔진, 거버넌스(Governance), 소형항공기 노선망 사업 등 다양한 화두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분노하고 격려하며 웃고 울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감천에서 폭설로 무너져 내린 상주, 문경의 비닐하우스 현장에서 절망으로 땅을 치던 도민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는 점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고개를 못 들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본의원은 언제나 3백만 도민 곁에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 안타까운 일 또한 참으로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경상북도의회의 의원으로 보낸 지난 4년은 지금껏 제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보람의 날들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에서 본의원이 도의회를 큰 허물없이 떠날 수 있는 것은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추켜세워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배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구미 출신 이용석, 정보호 두 분 선배의원님의 지도와 배려에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 쌀 수입개방, 소형항공기 노선망 사업,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힘을 합치고 마무리지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먼저 떠나는 본의원의 마음이 편한 것은 훌륭하고 든든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은 비록 떠나지만 마음은 언제나 이 곳에서 더욱 큰 함성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니다. 어려울 때마다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최원병 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 언론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변치 않는 우의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김석호는 우리 경상북도의 최북단 울릉에서, 최남단 청도, 최서단 상주에서 최동단 독도를 이 작은 가슴에 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귀중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존재 근거이자 가장 큰 후원자이신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과 38만 구미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송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랑스런 경상북도의회의 의원이었다는 긍지와 명예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정신을 이끌어 주신 영원한 민의의 전당 경상북도의회에 고별을 전하면서 저의 도의원 사직에 관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 조 례 안 : 5건
- 기 타 안 : 1건

## 【조례안 : 5건】

- 경상북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3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명 “ <u>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u> ”	제명 “ <u>경상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u> ”
제3조(신고기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의한 징계시효(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단,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만료일 3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⑤ (생략) (신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결정)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신고한 부조리 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 4. (생략)	제8조(보상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생략) 1. (생략) 2. 제3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된 사항 3. ~ 9.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3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내에 소재하는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작목반 및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인증신청서 접수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의뢰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는 농업용수 일반검사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수료 감면)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수수료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도내에 소재하는 영농법인, 농업인 단체, 작목반 및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인증신청서 접수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의뢰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는 농업용수 일반검사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3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업기술의 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제3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①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③도지사는 제①항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본부장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은 도의원, 친환경농업관련 학과 대학교수, 친환경농산물생산자 대표, 소비자 대표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운영)**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
4. 친환경농업시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 실적 평가
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도지사, 시장·군수, 관련기관, 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선진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노력한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시상 및 홍보한다.

**제10조(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인증기관 육성)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육성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제13조(소비촉진) ①도지사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수출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학교급식)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 보고서 제출) ①도지사는 매 연도 말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친환경농업육성 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추진 열의도
3. 친환경농업육성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
4.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실적
5. 녹비작물재배사업 실적
6.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7. 축산분뇨 처리실태 등

제16조(유통시설지원)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문 유통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대량 판매처 지원) 도지사는 대도시 대량 판매처에 대한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인력 확보 및 기구설치)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구를 추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및 관계기관·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3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
2. 친환경농업 교육 및 기술개발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촉진 사업
4. 친환경농업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 사업
5.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

6. 기타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존속기간)** 본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5년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기금관리 수탁기관에의 예치
2. 국·공채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제7조(기금의 심의)**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정산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국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6년 3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규격 및 제식"을 "도안, 기, 깃발"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규격 및 제식은"을 "도안, 규격, 재질 등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경상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을 "「경상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복제) ①대원의 제복, 모자, 부착물, 부속물, 부착물의 위치 등 세부규격서는 별표 4와 같다.

②단화, 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③방수복, 방수모, 방수화 등 안전장구류는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④T셔츠, 우의, 운동복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형태는 별표 4-1과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복제 등은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 4-2와 같다.

⑧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준용한다.

"별도 1, 별도 2, 별표 3의 부도, 별표 4, 별표 4-1, 별표 4-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 1】

의용소방대 기(제4조제2항관련)

(1) 도 안



(2) 기

- 규격 : 기 ..... 가로 110cm, 세로 75cm  
    휘장 ..... 가로 65cm, 세로 31cm  
    수실 ..... 길이 8cm
- 색상 : 바탕 ..... 진청색  
    휘장 ..... 황금색  
    수실 ..... 황금색  
    글씨 ..... 은백색
- 지질 : 우단
- 휘장은 금사자수로 하되, 윤곽선은 검정색실 처리한다.

(3) 깃 받

- 규격 : 무궁화깃봉 ..... 지름 6cm  
    깃대 ..... 길이 180cm, 직경 2.5cm
- 재료 : 깃봉 및 깃대 ... 철강재 백색도금  
    받침대 ..... 철재

【별도 2】

의용소방대 표지(제4조제3항관련)

(1) 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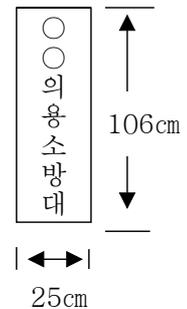
(2) 규 격

- 새 매 의 크 기 : 가로 90cm, 세로 58cm
- 햇 불 의 크 기 : 가로 9.3cm, 세로 14cm
- 태 양 의 크 기 : 원외경 37cm
- 소방호스 의 길 이 : 길이 43cm

(3) 재 질 : 동판(구리65%+아연35% 내외로 적절히 합금)

현 판

- (1) 두께 : 3cm
- (2) 지질 : 목재
- (3) 색 : 판 - 담홍색, 글씨 - 흑색



【별표 3의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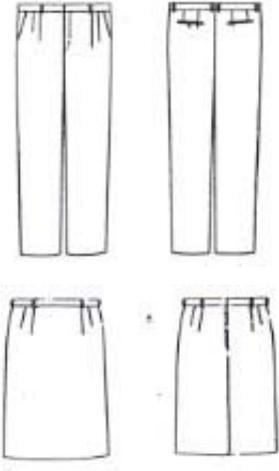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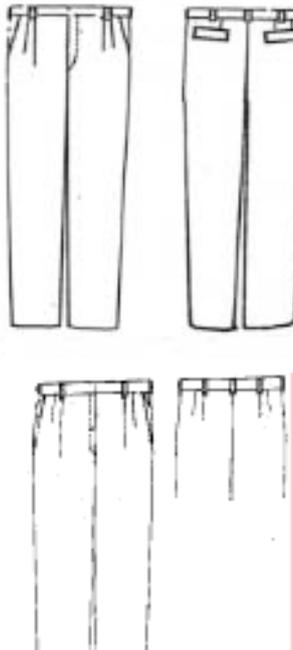
- ① 발급기관의 장 및 직인
- ② 계 인
- ③ 사진(5cm×3.5cm)
- ④ 신분증번호
- ⑤ 소속(○○의용소방대)
- ⑥ 성 명
- ⑦ 발급기관명(소방서단위)
- ⑧ 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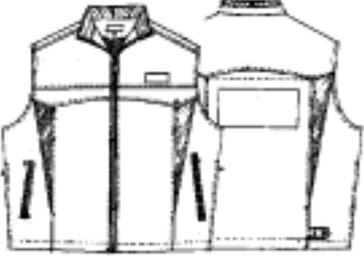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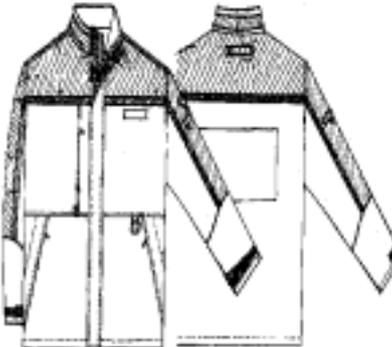
※ ④⑤⑥⑦은 흑색 모필로 기재

【별표 4】

1. 제복(제18조제1항관련)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정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자정복은 앞여밈을 3버튼으로 하고, 여자정복은 2버튼으로 한다.(소매단추는 남자 3개, 여자 2개씩으로 한다.)</li> <li>뒤등판은 트임이 없이 통으로 한다.</li> <li>남자정복의 흉부 좌우 안쪽에 입술주머니를 낸다.</li> <li>착용자 좌측 흉부에 하꼬주머니를 내고 허리부분 좌우에 후다주머니를 낸다.</li> <li>흰색와이셔츠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재질 사용가능</li> <li>【질낮은P/C(폴리에스테르/면) 제외】</li> <li>※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W 20/80</li> <li>P/W 40/60</li> <li>P/W 50/50</li> </ul> </li> <li>-소방방재청 권장재질 P/W 40/60</li> </ul> </li> <li>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회색</li> <li>-색도(KSA0062-2008) : 6.0PB(색상) 26(명도)/1.0(채도)</li> </u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자하의는 긴바지 형태로 하고, 여자하의는 스커트형태로 한다.</li> <li>바지앞면의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옆주머니를 낸다.</li> <li>바지허리 앞면의 좌우에 주름을 2개씩 잡아준다.</li> <li>바지뒷면의 좌우 둔부에 입술주머니를 내고 단추를 단다.</li> <li>스커트는 주름형태의 뒤중앙여밈으로 한다.</li> </ol>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기동복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깃은 와이셔츠식(안쪽 배색처리)으로 하며, 여밈은 앞몸판 중앙에 지퍼로 한다.</li> <li>2. 동복은 긴소매, 하복은 반소매로 하고, 동복의 소매끝은 카우스식으로 하며, 소매 끝에 각각 2개의 단추를 단다.</li> <li>3. 흉부 좌우에 겹붙임주머니를 달고 주머니윗부분에 지퍼를 달아준다.</li> <li>4. 몸판 양옆선 아래쪽에 트임을 준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재질 사용가능</li> <li>【질낮은P/C(폴리에스테르/면) 제외】</li> <li>※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 65/35</li> <li>P/W 50/50</li> <li>P/W 50/50(방염)</li> <li>P/W 10/90(방염)</li> <li>W 100(방염)</li> </ul> </li> <li>-소방방재청 권장재질 하 : P/R 65/35 동 : P/W 50/50</li> </ul> </li> <li>2.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색상 : 옅은 청회색</li> <li>-색도(KSA0062-2008) : 5.3PB(색상) 5.6(명도)/3.1(채도)</li> </ul> </li> <li>○ 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색상 : 짙은 청회색</li> <li>-색도(KSA0062-2008) : 7.0PB(색상) 2.8(명도)/1.5(채도)</li> </ul> </li> </ul> </li> <li>3. 방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염시는 연소성(KSK0585 : 잔염시간, 잔진시간, 탄화거리) 기준을 자체규정하여 시행한다.</li> </ul> </li> </o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의는 긴바지 형태로 한다.</li> <li>2. 바지앞면의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옆주머니를 낸다.</li> <li>3. 바지허리앞면의 좌우에 주름을 2개씩 잡아준다.</li> <li>4. 뒷면 좌우 둔부에 각각지퍼형 입술주머니를 낸다.</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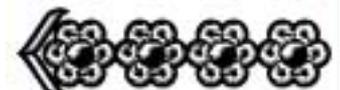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조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깃은 스탠드카라형으로 한다.</li> <li>2. 여밈은 앞몸판중양에 지퍼형으로 한다.</li> <li>3. 아래주머니는 좌우양쪽에 사선으로 지퍼처리한다.</li> <li>4. 앞뒤 몸판좌우에 반사지로 배색한다.</li> <li>5. 좌우옆몸판에 지퍼를 달고 메쉬안감처리를 한다.</li> <li>6. 뒤통판에 은색반사체로 “의소대 VOLUNTEER FIRE” 를 프린트한다.</li> <li>7. 안감은 통풍성있게 망사로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재질 사용가능</li> <li>【질낮은P/C(폴리에스테르/면) 제외】</li> <li>※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 100</li> <li>P/R 또는 P/W</li> </ul> </li> <li>-소방방재청 권장재질 P 100</li> </ul> </li> <li>2.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겉감 : 진곤색 (색도KSA0062-2008) : 7.2PB(색상) 2.2(명도)/1.6(채도)</li> <li>-배색 : 형광녹색 (색도KSA0062-2008) : 2.3GY(색상) 7.5(명도)/7.3(채도)</li> </ul> </li> </ol>
방한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깃은 스탠드카라형으로 한다.</li> <li>2. 여밈은 앞몸판중양에 지퍼형으로 하며, 지퍼끝까지 바람막이를 달아주고 벨크로테이프로 여밀수 있게 한다.</li> <li>3. 착용자의 우측흉부에 세로로 주머니를 내어 지퍼처리한다.</li> <li>4. 아래주머니는 사선으로 내고 지퍼처리한다.</li> <li>5. 앞몸판과 뒤통판 및 소매끝부분에 반사지로 배색한다.</li> <li>6. 후드는 탈부착형으로 카라뒤 목선에 지퍼로 연결한다.</li> <li>7. 내피는 긴소매의 탈부착형태로 한다.</li> <li>8. 뒤통판에 은색반사체로 “의소대 VOLUNTEER FIRE” 를 프린트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재질 사용가능</li> <li>【질낮은P/C(폴리에스테르/면) 제외】</li> <li>※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 100</li> <li>P/R 또는 P/W</li> </ul> </li> <li>-소방방재청 권장재질 P 100</li> </ul> </li> <li>2.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겉감 : 진곤색 (색도KSA0062-2008) : 7.2PB(색상) 2.2(명도)/1.6(채도)</li> <li>-배색 : 형광녹색 (색도KSA0062-2008) : 2.3GY(색상) 7.5(명도)/7.3(채도)</li> </ul> </li> </ol>

## II. 모자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남 자 정 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1. 의용소방대장 이상</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2. 지대장·부대장</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정비닐호스는 천정 표면이 곡선화 되도록 하고, 이음선은 비닐호스를 사용한다.</li> <li>2. 모자테의 바깥에는 주름테를 두르고 안쪽에는 비닐 땀받이를 붙인다.</li> <li>3. 주름테 양쪽에 금색단추를 달고 금선턱끈을 넣는다.</li> <li>4. 동테상단부위에 원형유지를 위하여 철심을 보강하고 레자로 봉합한다.</li> <li>5. 모자중심선을 기준으로 뒷변은 겹감과 유사한 색상의 망사직으로 한다.</li> <li>6. 지대장 이상 차양의 직위별 월계수 장식은 금색자수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의용소방대장이상 월계수잎16매(좌우 각 8매)</li> <li>나. 지대장 월계수잎14매(좌우 각 7매)</li> </u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카바 : 하정복지 겹감용</li> <li>2. 차양 : 흑색 멜톤지</li> </ol>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여 자 정 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자안 망사심은 원형을 유지하도록 고무 봉제한다.</li> <li>2. 땀받이는 머리둘레 슬기가 갖추어지게 돌려박는다.</li> <li>3. 주름테 양쪽에 귀단추를 달고 금선턱끈을 넣는다.</li> <li>4. 지대장이상 차양의 월계수 장식은 금속판으로 한다. (월계수잎은 남자정모와 동일)</li> </ol>	<p>하정복지 겉감용</p>
기동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자 전면 안쪽에 보강재를 접착하여 앞면을 세운다.</li> <li>2. 천정에 통기용 구멍 4개를 내고 아이렛 처리한다.</li> <li>3. 차양은 주머니식으로 하며 차양 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2선을 누빈다.</li> <li>4. 챙길이는 8cm로 한다.</li> <li>5. 여자의용소방대원 기동모는 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질 : 하기동복 하의재질</li> <li>2. 색상 : 하기동복 하의색상</li> </ol>

### III. 부착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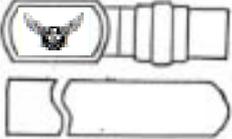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직위표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터빈모양 4개와 새매날개 4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95mm, 세로 25mm로 한다.	1. 금속재의 경우 - 황동판에 니켈금색도금을 하고 새매날개 바탕은 흑색 에폭시 처리  2. 자수의 경우 - 전체크기 : 남자(가로 10.5cm, 세로 4.5cm), 여자(가로 8.5cm, 세로 4cm)로 하되, 여자의 경우 가로크기 조정 가능  - 색상 : 바탕은 기동복 하의색상, 직위표장은 황색비스코스 레이온사(120데니아)  - 가공 : 배면에 P/C 심지(고밀도)를 접착
	시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터빈모양 4개와 새매날개 3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91mm, 세로 25mm로 한다.	
	시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터빈모양 4개와 새매날개 2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86mm, 세로 25mm로 한다.	
	의용소방대장	 터빈모양 4개와 새매날개 1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82mm, 세로 25mm로 한다.	
	지대장 부대장	 터빈모양 3개와 새매날개 1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63mm, 세로 25mm로 한다.	
	부장	 터빈모양 2개와 새매날개 1개로 하고 전체크기를 가로 44mm, 세로 25mm로 한다.	
	반장	 1. 전체크기 -가로 25mm, 세로 25mm 2. 터빈크기 -외경 19mm의 정육각형 3. 태극문양크기 -지름 7mm 4. 측면에 2mm를 띄운 후 폭 4mm 새매날개 1개를 부착한다.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모자 표장	<p>1. 정장</p>  <p>2. 약장</p> 	<p>1. 정모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크기 : 가로 78mm, 세로 50mm</li> <li>-태양크기 : 원외경 32mm</li> <li>-불꽃크기 : 가로 8mm, 세로 12mm</li> <li>-호스수평길이 : 37mm</li> <li>-단. 여자정모용의 크기는 기동모용과 같다.</li> </ul> <p>2. 기동모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크기 : 가로 53mm, 세로 35mm</li> <li>-태양크기 : 원외경 22mm</li> <li>-불꽃크기 : 가로 6mm, 세로 9mm</li> <li>-호스수평길이 : 25mm</li> </ul>	<p>1. 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동판에 24k 금도금하고 태양부분은 적색에폭시 처리</li> </ul> <p>2. 약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매와 관창부분은 황색실, 태양부분은 적색실의 비스코스 레이온사로 하되, 햇불은금사로 자수처리</li> </ul>
지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크기 : 가로 53mm, 세로 53mm</li> <li>-원모양크기 : 직경 30mm</li> <li>-불꽃모양크기 : 가로 12mm, 세로 18mm</li> <li>-무궁화꽃모양 : 가로 24mm, 세로 8mm</li> <li>-길이 24mm의 지휘봉 2개 교차</li> </ul>	<p>황동판에 24k 금도금</p>

구 분	형 상	제 식	재 질
소 매 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크기 : 가로 97mm, 세로 89mm</li> <li>-리본크기:수평길이 87mm, 폭10mm</li> <li>-리본안에 “의소대 VOLUNTEER FIRE” 표기</li> <li>-불꽃크기 : 가로 22mm, 세로 32mm</li> <li>-불꽃받침대 : 가로 41mm, 세로 29mm</li> <li>-가로 34mm, 세로 27mm 의 해태두상을 불꽃을 중심으로 좌우대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바탕 : 진청색 (곤색)의 옥스퍼드트월지</li> <li>2. 비스코스레이온사(120데니아)로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색실: 영문글자</li> <li>-적색실: 리본모양</li> <li>-황색실: 해태 두상, 햇불, 햇불받침대, 테두리선</li> <li>-흑색실: 리본테두리 및 해태, 햇불의 형상표시용</li> </ul> </li> </ul>
뺃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양외경 9mm의 모자 표장 축소판으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동판에 24k 금도금하고, 태양부분은 적색 에폭시 처리</li> </ul>
직위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auto;">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대 장</p> <p style="font-size: 18px; margin: 0;">(예시)</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크기 : 가로 30mm, 세로 15mm</li> <li>-글씨 : 고딕체</li> <li>-종류: 대장, 부대장, 지대장, 부장, 반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탕: 적색의 옥스퍼드트월지</li> <li>-글씨: 백색의 비스코스레이온사(120데니아)로 자수처리</li> <li>-테두리: 진청색(곤색)으로 마감</li> </ul>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가 스 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크기 : 가로 81mm, 세로 43mm</li> <li>- 불꽃모양 5개(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81mm, 세로 28mm)</li> <li>- 불꽃크기 : 가로 9mm, 세로 14mm</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속재의 경우 황동판에 24k 금도금 (글씨바탕은 적색에 폭시처리)</li> <li>2. 자수의 경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크기 : 가로 84mm, 세로 31mm</li> <li>- 불꽃모양 4개(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84mm, 세로 17mm)</li> <li>-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펜 전체크기 : 가로 95mm, 세로 50mm</li> <li>- 바탕재질 : 기동복상의 색상, 조끼, 방한복 색상</li> <li>- 가공 : 배면에 P/C 심지(고밀도)를 접착</li> <li>- 황색실 : 햇불, 새매날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크기 : 가로 74mm, 세로 31mm</li> <li>- 불꽃모양 3개(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74mm, 세로 17mm)</li> <li>-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색실 : 햇불, 새매날개</li> <li>- 적색실 : 글씨바탕</li> <li>- 백색실 : 영문글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크기 : 가로 70mm, 세로 31mm</li> <li>- 불꽃모양 2개(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64mm, 세로 17mm)</li> <li>-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색실 : 햇불, 새매날개</li> <li>- 적색실 : 글씨바탕</li> <li>- 백색실 : 영문글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크기 : 가로 70mm, 세로 31mm</li> <li>· 글씨부분 : 가로 70mm, 세로 14mm (글씨는 "VOLUNTEER FIRE"로 표기)</li> <li>- 불꽃모양 1개(불꽃과 새매날개 가로 57mm, 세로 17mm)</li> <li>- 불꽃크기 : 가로 10mm, 세로 15mm</li> </ul>	

#### IV. 부속물

구 분	형 상	제 식	재질 및 색상
넥타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퍼식 넥타이로 한다.</li> <li>2. 곁감과 심의 재단은 정바이어스로 한다.</li> <li>3. 넥타이무늬는 스트라이프 처리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폴리에스테르원단 선염처리</li> <li>2. 진회색과 연분홍색 혼합색상</li> </ol>
넥타이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중 집게형으로 한다.</li> <li>2. 모자표장(정장)의 태양부분 원외경 32mm를 12mm로 축소한 모양으로 한다.</li> <li>3. 핀길이 55mm 핀너비 6mm(3등분) 두께 1.2mm</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황동판에 24K금 도금</li> <li>2. 태양부분은 적색 에폭시처리 (태양원외각부분은 금색)</li> </ol>
요대 및 버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요대는 폭 30mm, 길이 110mm정도로 한다.</li> <li>2. 버클은 중앙에 모자표장 도안을 삽입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요대는 검정가죽으로 한다.</li> <li>2. 버클은 검정색 에폭시바탕에 금색테두리, 금색 모자표장으로 한다.</li> </ol>
금장 단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크기를 중형(지름21mm), 소형(지름15mm)으로 구분 한다.</li> <li>2. 중앙에 모자표장 도안을 삽입한다.</li> <li>3. 단추 사용처 -중형 : 정복상의앞 -소형 : 정복견장, 소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속재질</li> <li>2. 바탕은 검정색, 테두리와 모자표장은 금색</li> </ol>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이름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크기 : 가로 80mm, 세로 25mm(소속·직위부분 : 세로 8mm, 이름부분 : 세로 17mm)</li> <li>글씨체 -정복용 : 고딕체 -기동복용 : 명조체</li> <li>정복용의 뒷면은 옷핀 형태로 고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복용은 필름에 칼라프린팅 후 에폭시 처리</li> <li>기동복용은 폴리에스테르의 재질로 재직하여 와펜자수처리</li> <li>색상은 소속·직위부분은 적색바탕에 백색글씨, 이름부분은 살구색바탕에 흑색글씨</li> </ol>
등판 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끼의 경우 -글씨전체의 크기 : 가로 200mm, 세로 118mm · 한글 : 세로 58mm · 영문 : 세로 45mm · 한글과 영문글씨의 간격 : 15mm</li> <li>방한복의 경우 -글씨전체의 크기 : 가로 285mm, 세로 160mm · 한글 : 세로 80mm · 영문 : 세로 60mm · 한글과 영문글씨의 간격 : 20mm</li> </ol>	<p>은색 반사체 프린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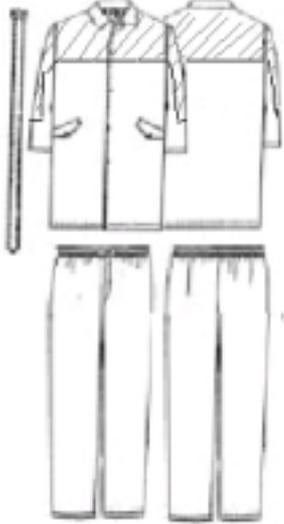
## V. 제복별 부착물의 부착위치

구분	부착물의 종류	부 착 위 치	비 고
정복	직위표장(금속재)	각 직위표장 중앙이 어깨끝에서 어깨선의 1/3 위치가 되도록 부착	나사
	가슴표장(금속재)	앞가슴 좌측 하꼬주머니 상단	나사
	지휘장(금속재)	앞가슴 좌측 하꼬주머니 하단	나사
	이름표(필름재질)	앞가슴 우측(가슴표장과 동일높이)	핀
기동복	직위표장(자수)	견장(길이 11cm, 폭 5cm의 견장지에 자수) 단 여자용은 길이8.5cm 폭4cm의 견장지에 자수)	와펜
	가슴표장(자수)	앞가슴 좌측 상단절개선 5mm위 중앙	와펜
	이름표(자수)	앞가슴 우측 상단절개선 5mm위 중앙	와펜
	소매표장(자수)	좌측팔 어깨끝에서 6cm아래	와펜
	시·도마크(자수)	우측팔 어깨끝에서 6cm아래	와펜(별도)
조끼	가슴표장(자수)	앞가슴 좌측 상단 절개선 5mm위 중앙	와펜
	직위표(자수)	앞가슴 우측 상단 절개선 5mm위 중앙	와펜
	등판표시(은색반사체)	뒷몸판 중앙절개선 하단 4cm아래	프린트
방한복	가슴표장(자수)	앞가슴 좌측 반사테이프 하단 1cm 중앙	와펜
	직위표(자수)	앞가슴 우측 반사테이프 하단 1cm 중앙	와펜
	소매표장(자수)	좌측팔 어깨끝에서 6cm아래	와펜
	등판표시(은색반사체)	뒷몸판 반사테이프 하단 4cm아래	프린트

※ 비고 : 부착위치의 방향(좌·우측 등)은 착용자 기준이며, “비고란”의 “별도”의 의미는 지급받는 품목을 개별적으로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함

【별표 4-1】

**기타제복(제18조제4항관련)**

구분	형상	제식	재질 및 색상
T셔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깃은 폴로형 T셔츠 형식으로 한다.</li> <li>2.흉부좌측에 겹붙임 주머니를 단다.</li> <li>3.밑단은 편직 처리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질 -흡한속건(Cool)기능의 폴리에스테르 재질</li> <li>2. 색상 -기동복상의 색상과 동일 (열은 청회색)</li> </ol>
우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버코트형태로 한다.</li> <li>2. 겹감 및 배색,반사테이프의 형태는 방한복에 준하여 제작한다</li> <li>3. 두건은 코트깃에 스냅으로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li> <li>4. 허리부분에 벨트고리를 단다.</li> <li>6. 양쪽주머니는 사선모양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뚜껑이 덮을 수 있도록 한다.</li> <li>8. 몸판 어깨부분과 소매내피를 망사처리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질 -방수,투습기능의 폴리에스테르 재질</li> <li>2. 색상 -방한복 동일 (몸판-진곤색 배색-형광녹색)</li> </ol>
운동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의 깃은 나비깃으로 한다.</li> <li>2. 지퍼는 깃끝까지 달아야한다.</li> <li>3. 하의 허리단에는 고무밴드를 넣고 보조용면끈을 넣는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질 -시중 일반재질</li> <li>2. 색상 -지방자치단체 자체 결정</li> </ol>

【별표 4-2】

의용소방대원복제지급품목표(제18조제7항관련)

종 류		수 량	사용기간	지급대상	비 고		
제 복	정 복	동복	1	3	지대장이상		
		하복	1	3	지대장이상		
	기동복	동복	1	2	전의용소방대원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이내에 지급
		하복	1	2	전의용소방대원		
	조 끼		1	2	전의용소방대원		
	방한복		1	3	전의용소방대원		
모 자	정 모	1	3	지대장이상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이내에 지급		
	기동모	1	2	전의용소방대원			
단 화		1	2	전의용소방대원			
기동화		1	3	전의용소방대원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대의 표지)</b> ①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표지로 한다.</p> <p>②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u>규격 및 제식은 [별도 1]과 같다.</u></p> <p>③대의 표지와 현판의 <u>규격 및 제식은 [별도 2]와 같다.</u></p>	<p><b>제4조(대의 표지)</b> ①(현행과 같음)</p> <p>②----- 도안, 기, 깃발은-----</p> <p>③-----도안, 규격, 재질 등은 -----</p>
<p><b>제10조(대장 및 대원의 임용)</b> ② -----<u>경상북도회계 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u> -----</p>	<p><b>제10조(대장 및 대원의 임용)</b> ② -----「<u>경상북도회계 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u>」-----</p>
<p><b>제18조(복제)</b> ①<u>대원의 복제는 [별표 4]와 같다.</u></p> <p>②<u>제1항의 복제는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u></p> <p>③<u>복제는 기존대원은 매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u></p>	<p><b>제18조(복제)</b> ①<u>대원의 제복, 모자, 부착물, 부속물, 부착물의 부착위치 등 세부규격서는 별표 4와 같다.</u></p> <p>②<u>단화, 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u></p> <p>③<u>방수복, 방수모, 방수화 등 안전장구류는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④T셔츠, 우의,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형태는 별표 4-1과 같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복제 등은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p> <p>⑦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 4-2와 같다.</p> <p>⑧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준용한다.</p>

**【기타안 : 1건】**

-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

□ 근거 :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조정대상 의원

- 교육환경위원회 위원 이우경(李愚卿, 경산시 1 선거구)

□ 사유

- 위 의원은 교육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아스콘·레미콘제조, 토석채취, 시멘트 가공 등 산림과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행정자치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가 있어 상기 의원의 소속 위원회를 조정하고자 함.

□ 의결사항

- “이우경” 의원 소속 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 행정사회위원회
- 조정일 : 경상북도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06.3.7. 11:00)

## **의정활동보고서(제205회 임시회)**

2006. 4 인쇄 / 2006. 4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